

2020년도 제2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0. 6.(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홍지만(분과위원장 대행), 박성호,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3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609건(안전번호 제2020-128315호~129321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128315호~128319호는 네이버 카페 및 블로그에서 제공되는 일본 애니메이션 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128320호는 네이버 카페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곡의 전체분량이 아닌 일부 편집본을 제공한 점, 권리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53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50건(안전번호 제2020-3174호~3223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20개 안건은 가결하고, 나머지 30개 안건{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25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3개 안건(8개 안건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불참으로 박성호 심의위원장을 제외한 연장자인 홍지만 위원이 분과위원장 대행함)
홍지만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3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홍지만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전차 회의록 5쪽에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6쪽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8쪽에 밴드명, 9쪽에 밴드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참고로 비식별 처리해야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미리 회의록에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차 회의록 8쪽과 9쪽의 밴드명은 공개될 경우 불법복제물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므로 밴드명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면 될 것임.
- B 위원, C 위원: 이견 없으며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

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온라인서비스제공자명, 밴드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후지TV', 'MBN', 'TV조선', '이십세기폭스', '넷플릭스', '미국 Showtime', 'CAPCOM Co.,LTD', '월트디즈니컴퍼니', '(주)한글과컴퓨터', 'Adobe Systems Inc.'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C 위원, A 위원, B 위원: 해당 없음.

- 홍지만 분과위원장 대행: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60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28315

호~128349호는 보호원에서 10월까지 시범 운영중인 '비공개 사이트 불법복제물 공익신고제'를 보고 실명의 민원인이 직접 불법복제물에 대한 자료 수집하여 보호원이 제공하는 신고용 프로그램으로 신고했음. 보도자료 내용은 검토보고서 11쪽과 12쪽에서 확인 가능함.

(순번 1번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 ■■■■■'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재생시간은 24분 37초로 한 화 전체분량임.

(순번 2번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제공중임. 서로이웃에게만 공개되는 영상임. 재생시간은 24분 20초로 한 화 전체분량임.

(순번 3번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를 블로그에서 서로이웃에게만 공개하고 있음. 해당 영상의 재생시간은 24분 21초로 한 화 전체분량임.

(순번 4번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을 서로이웃을 맺은 이용자에게만 공개하고 있음. 영상의 재생시간은 23분 38초임.

(순번 5번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면서)일본 애니메이션 '♠♠♠♠♠'을 서로이웃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영상 재생시간은 23분으로 한 화 전체분량을 제공중임.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행정작용에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차가 발생할 수 있음. 심의 시점에 심의대상 게시물이 전송중인지 takedown되었는지 운영이 중단되었는지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홍지만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128315호~12831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C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민원인이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보호원에 신고한 것으로 민원 신고와 달리 불 이유가 없음. 시정권고를 가결하는데 동의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8315호~12831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28320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임. 네이버 카페에 '♠♠♠ ♠♠ ♠♠ ♠♠ ♠♠♠ ♠♠ ♠♠ ♠♠' 일부를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원곡이 아닌 변안곡을 제공하고 있음. 원곡은 일본 음원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지만 변안곡이 합법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오프닝곡의 약 3분의 1을 제공하고 있고 직, 간접적으로 영리 목적

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죄가 친고죄이고 저작권이 사적인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참고로 2020. 7. 28. 개최된 제2020-152회 전체위원회에서 엔딩곡과 오프닝곡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결되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지만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12832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함)
- C 위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의미가 있어야 될 것임. 일본 애니메이션 엔딩곡 덕후인 사람이 엔딩곡을 게시했으나 상업적인 광고가 없었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시정권고 제도가 취미생활 정도는 용인해줘야 한다는 다수의 위원님들의 견해가 받아들여져 부결되었으나 음원권리에 대해 경제적인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원 전체분량이 아닌 일부만 제공하고 상업목적의 광고가 보이지 않음. 전체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취지를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과 사안이 다름. 지난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한 게시물은 굉장히 많이 블로그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

공하고 있었고 합법 시장에서 판매중이었는데 금번 심의대상 게시물인 번안곡은 합법 시장에서 판매중인지 확인이 되지 않음.

금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이견 없으며 부결 의견에 동의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8320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28321호~129321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어문,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그중 일부 안전건을 설명하겠음.

(영화 '물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밴드에 영화 AVI 파일을 첨부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밴드명은 '◆◆ ◆◆'임. 멤버수는 5명이지만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밴드 소개와 게시글을 볼 수 있는 공개형 밴드임. 영화 물란은 2020. 9. 17. 개봉했고 2020. 10. 5. 기준 누적 관객수는 23만명임. 현재 극장 상영중이며, 유역비, 이연결 등이 출연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란의 실사판임.

(영화 '테넷'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모바일웹하드에서 230포인트에 판매중임. 파일용량은 1.2GB이지만 화질이 좋지 않음. 영화를 다운로드받아 재생하면 한국어 자막을 확인할 수 있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로 시간의 흐름을 뒤집는 인버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세상을 파괴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액션, SF 영화임.

(영화 '오케이 마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에서 193포인트에 판매중임. 파일크기는 3.8GB이며 고화질임. 영화 오케이 마담은 2020. 8. 12. 개봉했고 관객수는 122만명임. 2020. 9. 17. VOD가 출시되었으며 네이버시리즈on에서 1만원에 구매 가능함.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홍지만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심의안전 목록과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128321호~12932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웹하드 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됨.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가결 의견임.
- B 위원: 이견 없으며, 가결 의견에 동의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28321호~129321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12832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28315호~128319호, 128321호~129321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1쪽부터 22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3174호~3223호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20개의 안전에 대하여는 가결하고, 나머지 30개 안전{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25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3개 안전(8개 안전은 부결사유 중복)}은 부결함.”

4. 폐회 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2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3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0. 13.

분과위원장 대행 홍지만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